

##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자율성 존중의 원칙

김문정\*

### 요약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대에 적합한 자율성의 논의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강조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를 통해 과거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게 변모,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그동안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검토되어 왔던 자율성의 개념을 오늘날 현대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신조가 반영된 개인과 그러한 구조에 둘러싸인 개인의 삶의 조건들 속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자율성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경쟁과 축적의 미덕의 시대에 단지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과 방해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관계에 현존하는 극심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개인적 삶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넘어서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지배의 자유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에 처한 인간들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하나의 시대적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비지배 자유

## I. 시작하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 무엇이 문제인가?

생명의료윤리 담론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 만큼 많은 논쟁을 야기해온 주제도 없을 것이다. 이는 생명의료윤리 4원칙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개의 경우 다른 원칙보다 더 강조되며, 마치 절대적인 원칙인양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자율성의 원칙은 생명의료윤리의 쟁점들이 지닌 특징으로 인해 다른 원칙들에 비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생명윤리의 이슈들을 논의함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생명의료윤리의 여러 쟁점들에서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로써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환자 당사자가 자신의 질병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스스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러한 결정을 수용할 때 비로소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된다고 본다.

비침과 칠드레스에 의하면, 개인의 자율성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1)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2) 이해하면서(with understanding), (3)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지배적 영향력이 없어야(without controlling influences)”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1].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능력을 갖춘 환자가 의사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외부의 그 어떠한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학적 의사결정의 판단 주체가 될

때 비로소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환자의 자기 결정능력(decision making capacity), 즉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율적 행위 또는 선택은 오히려 자유의 행사에 더 가깝다.<sup>1)</sup> 자율성의 존중이 자유의 존중과 혼동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율성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을 오로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물음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그것들이 지닌 사회적 함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러한 자율적 행위나 선택이 왜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은 개인에게 한정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 사회의 제도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개인주의적이고 고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개인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율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동체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명윤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국

1) 생명윤리의 4원칙을 제시한 비침과 칠드레스는 자율성존중의 원칙과 관련해 칸트와 밀의 견해를 소개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존중에 더 가깝게 이해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율성의 원칙은 밀의 견해에 더 근접해 있음을 설명한다.

가의 정책적 지원과 제재가 요구되며 공적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 질서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생명의료윤리적 이슈들이 지닌 사회적 측면들을 도외시한 채, 더욱이 도덕적 반성의 수행 없이 그저 개인 선택의 물음들로 환원시킴으로써 형식적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자유의 의미로 이해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생명윤리의 담론에서 공고히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liberal individualism)라는 사회적 이념의 신조가 잘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명목으로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추구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비록 그러한 간섭이 개인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좀 더 바르고 현명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미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주목받던 시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중요한 사회적 이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개인의 권리가 핵심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정착되었고, 이성적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인정되었으며 관용의 덕이 강조되었다[2].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는 곧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온정적 간섭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의료현장에서 점차 환자의 권리에 대한,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

산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성향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분위기나 이를 자유의 원칙에 가깝게 이해하는 경향 역시 우연의 일치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을 바라보던 당대의 정서와 지배적 가치관 등이 반영된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율성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검토되어 왔던 자율성의 개념을 오늘날 현대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neo-liberal individualism)' 신조가 반영된 개인과 그러한 구조에 둘러싸인 개인의 삶의 조건들 속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자율성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장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따라서 그의 운명 역시 달라졌다. 그에게는 새롭게 이상화된 인간 모델과 도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의 운명을 좇아가면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 개념을 찾아갈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율성의 의미가 될 것이다.<sup>3)</sup>

2) 이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관점과 자율성의 주체인 자아의 관계적 맥락에 주목하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자율성 논의의 한계들이다.

3)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대에 적합한 자율성의 논의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강조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 담론에서의 '적용론'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며, 이는 향후 연구자의 과제가 될 것이다.

## II.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탈사회적 개인화

근대의 주인공 자유주의는 절대왕정과 신분사회라는 구체제의 각종 제한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선언을 통해 자신의 기본 신조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봉건적 계서제(階序制)의 사슬을 과감히 끊고, 타인의 의지에 결코 구애받지 않는 자연권의 소유자로서 개인은 외부의 권위가 요구하는 그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실천할 수 있는 권위자로 존재했다. 모든 사회적 제도나 규칙 혹은 국가의 권력마저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기여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이처럼 근대의 인간은 존엄성 그 자체로, 더 이상 지배와 복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자유는 인간존엄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덕목이다.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주의에 천착된 자유는 논리적 충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한 자유는 곧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존중하게 되면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공공성이라는 이념적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유가 자유로 인해 제한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근대의 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양쪽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관점을 찾아나가야 했다. 인간존엄성과 개인주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공동체 삶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근대의 자유주의는 결코 ‘무연고적 자아’를 지향할 수 없었으며, 인간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로 자신을 인식해야 했다.<sup>4)</sup>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간섭하지 않는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4) 로크(J. Locke, 1632-1704)의 『통치론(1690)』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타인의 천부권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호간 합의에 의한 규칙의 제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국가 안에서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데, 즉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란,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이 만든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일정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요컨대 로크에 의하면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법의 목적이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보전하고 확대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밀(J. S. Mill, 1806-1873)도 자유에 대해 로크와 유사한 입장이다. 물론 자신의 주저 『자유론(1859)』, 1장 서론에서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한(것처럼 보인다). 그는 타인에게 그 자신의 선(善)을 위해서라도 선을 강제하지 말 것이며, 타인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간섭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리고 사회가 사회보호를 위해 사회적 처벌인 법적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은 그런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밀은 5장 현실적용에서 간섭을 말한다. 가령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는 행위를 간섭해야 한다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를 허용한다. 이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 향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간섭이 필요한 경우를 정당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밀의 자유 역시 무연고적 원자화된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자유를 옹호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조 격인 스미스(A. Smith, 1723-1789) 역시 사회적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도덕감정론(1759)』에서 그는 시중일관 타인과의 조화로운 사회관계적 삶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애(self-love)의 원리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동감(sympathy)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학 사상 최초의 체계적 저서로 평가받고 있는 『국부론(1776)』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스미스가 강조한 것은 ‘순수 자연상태의 자유경쟁’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균형과 조화이다. 그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실현하는 시장의 자유경쟁은 사회 전체의 부와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을 오늘날 시장 만능주의 혹은 무한경쟁의 상징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익을 위해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는 스미스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은 개인의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부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시장경쟁을 매우 중요시한다. 또한 시장경쟁은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보전을 오직 사회 속에서만 찾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의 공정한 경쟁이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미스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경제적 국가주의인 중상주의 시대에 귀족과 대자본 계급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인위적 독과점은 특정 계급의 배타적 이익 추구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따라서 스미스는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공동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이념적 토대로서 자연상태의 자유경쟁을 강조한 것이었다.

추구하다보면 상충되는 이해관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었다. 즉 공정한 자유경쟁에 의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롭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 공동선과의 균형적인 추구도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러한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의 출발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렇지만 개인주의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를 통해 과거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게 변모,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우만(Z. Bauman, 1925~)의 표현을 빌리자면,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로 변모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즉 개인의 선택들을 집단적 기획들이나 행동들과 연결시켜주던 유대관계들이 녹아버리고 이성적인 집단적 기획이 개인 차원의 과감성과 정력에 맡겨지는 사적 기획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3]. 이는 사회제도의 무력함과 생존의 사사화를 의미하며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상호의존성 대신에 급진적인 분리의 생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제 모든 책임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선택, 자급자족성, 과도한 독립성을 주장하는 개인화는 반사회적인 사회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주체성과 개인주의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4].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거대한 경제적 기계의 한 톱니바퀴로 전락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5], 즉 개인의 자유와 실현을 시장경제에 예속시키면서 개인성과 사회성의 상호 존재 기반을 위협에 빠트린다. 결국 '나'와 '우리'의 균형이 깨어지고 '우리가 없는 나'로서의 탈사회적 개인화라는 '새로운 개인주의' 시대가 창출되었다[4].

“애당초 사회 같은 것은 없다. 오직 개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을 뿐이다.”라는 전 영국 총리 대처의 언명은 새로운 변종의 개인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사회정치적 수단들이 해체된 그 자리엔 절대적 권위의 시장이 등장하여 계서적 사회 질서를 복원시켰다. 즉 사회적 삶이 분절된 개인은 사회의 대리자로 나선 시장을 직접 상대하고 개인의 생존을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며 개인의 발전은 오직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쫓아가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무한한 개인의 자율성을 약속받는 대신에 시장의 작동방식과 변화에 대해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시장친화적인 개인이 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모든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자유, 독립성, 자율성이 극대화되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책임지던 문제의 해결자가 개인에게로 전가되었다. 질병, 실업, 그리고 빈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온 위험과 책임의 문제가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에게 '네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불안과 위험을 스스로 자유롭게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친다. 이제 '자유'라는 구호아래 개인들 스스로 시장경쟁에 맞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도전할 것을 재촉 받는다.

이 같은 시장주의적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세계화'를 형식으로 급속하게 전개되어 나가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은 시장의 논리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가급적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규제 완화와 자유화의 강화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사회정치적 수단들을 해체시키고 대신에 시장이 사회를 관리,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더 이상 국가가 통치할 사회는 없으며, 시장친화적인 개인만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뿐이다. 개인에게 명령하고,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던 모든 간섭과 통제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개인은 사회적 보호 장치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

서 강력한 시장권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생존과 성공이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개인은 철저히 ‘기업가적 자아(enterprising self)’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과 사회적 관계 및 활동들을 수요와 공급 또는 투자비용 대비 편익 계산 등 경제적 형태에 입각해 조직하고 경영하며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바로 그러한 기업적 인간이 될 것을 강요 받는다[6]. 자신의 가치가 오직 시장이 보증하는 교환가치로 측정되는 만큼 개인의 능력과 자질은 시장이 명령하는 표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끼워 맞추어 수밖에 없다. ‘자기계발’, ‘자기관리’, ‘자기경영’ 등을 추구하는 기업적 인간은 자기를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갈고 닦아 스스로 원하는 자유로운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4]. 개인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즉 시장이 원하는 인재가 될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뒤처지면 끝없이 추락하여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나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향상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자기역량의 끝없는 강화를 위해 자기관리, 자기계발, 자기통제의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항상적 경쟁상황을 독자적으로 돌파해나가지만 ‘성공’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성공’이란 다름 아닌 ‘살아남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개인들은 끊임없는 ‘구조조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선택되기 위해 자기규율적 존재로 스스로를 조련하고 자신의 욕망과 육체, 감정과 단점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기업가적 자아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한 강박적 자기성찰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개인들의 텔로스(telos), 즉 신자유주의적 도덕이 요구하는 인간 모델이다[7].

### III.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분절된 사회에서의 ‘비지배 자유’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적 소유권을 핵심 가치로 추구해 온 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 세계불황의 구조위기를 배경으로 자신의 내용을 확대 또는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경제적 형식으로 재편되고 오로지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계산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자유만이 통용되었다. 국가는 이른바 ‘최소 국가’에 머물러야 하며 가급적 개인의 삶이 영위되는 사적 영역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의 공공서비스 영역, 즉 개인의 안전, 노후, 공동체적 의례 등까지도 이제는 시장화·상품화되어 모두 개인들에게 전가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 정책 수립과정, 가령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용-편익 분석이 도입되고 교육정책마저도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설정하는 등 더 이상 시장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는 곳은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개인의 덕목으로 강조되고, 국가는 개인이 알아서 이러한 덕목을 갖추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둘 뿐이다. 이제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을 누리는 ‘자유로운’ 개인만이 존재한다. 국가는 개인에게 무제한적 자유를 부여한 대가로 자신의 책무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절대적 시장논리의 전면화라는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 독립성, 자율성, 성취가 극대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주체는 축소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즉 ‘약육강식’의 자유이자 자율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냉혹한 시장게임에서 퇴출당하는 그 순간 그저 사회적 패배자로 전락하는 냉혹한 현실

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러한 의미, 적자생존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유 확대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의 보장이다. 누구에게도 예측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평등의 의미로서 자유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개인들은 이미 제반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나 적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때라야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화폐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 위계질서가 결정되고 인간은 결국 예종의 사슬에 묶여 그의 자유는 속박되어버린다. 따라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예측이나 종속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내용이며,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condition)의 보장을 우선과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 즉 예측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자유만이 이 시대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강제의 부재가 아니라 예측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특히 페팅이 제시하는 제 3의 자유, '비지배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가 바로 그것이다.<sup>5)</sup> 이러한 자유관은 오늘날 신자유

주의 시장경쟁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단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바라보는 자유관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주류와 사회 권력의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주류,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양극화의 확대로 빈익빈 부익부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우며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간의 힘의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때 비지배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평등한 구성원의 지위를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로 정의되는 고전적 자유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비지배 자유는, 특히 개인의 자율성과 법의 지배를 핵심적 가치로 삼았던 로마공화주의 전통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적 전통을 계승한 비지배 자유는 우선 자유의 근대적 의미인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absence of interference)'와 분명한 선을 긋는데, 그것은 타인의 의한 '지배의 부재(absence of domination)'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때 간섭과 지배의 구별은 자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섭은 행위자의 활동이나 선택이 다른 행위자의 의도적인 개입인 데 반해, 지배는 행위자의 활동이나 선택이 타인에 의한 임의적인 간섭에 종속될 때 발생한다. 가령 누군가 "타인이 내릴 수 있는 특정한 선택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on an arbitrary basis)'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지배 또는 예측이 가능하다[8]. 이처럼 자유를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불간섭의 문제로 바라보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자유는 지배의 부재, 즉 "자의적 간섭을 행할 수 있는 타인의

5)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non-domination'을 '비지배(非支配)'로 국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필자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예측이나 종속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뜻으로 '비예측 상태' 혹은 '비종속 상태'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다.

권력에 노출되지 않는”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페릿의 ‘신공화주의적 접근 방식’이다.<sup>6)</sup>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란 “어떤 인간이 타인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9]. 그런 의미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물리적 강제나 위협에 의한 제약이 없는 한 자유롭다. 이때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고, 타인에 대하여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법적인 규제는 없어야 한다. 법 또한 자유를 침해하는 외부의 제약요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지배 자유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타인의 의지나 선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독립해서 살아가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를 지향한다. 페릿은 비지배 자유를 “타인의 자의적 간섭에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로 정의한다. 이때 비지배 자유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조건에 초점을 둔다. 즉 자유의 핵심이 자유로운 행위(action) 또는 선택(choice)이 아니라 비지배적 조건(condition) 또는 지위(status)라는 점이다. 이처럼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건이나 지위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는 사

적 영역에 대한 법적 제재나 공적 간섭, 혹은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했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전환을 위해서이다. 가령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방해받지 않는 한 사적 영역에 대한 법적 제재나 공적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국가의 역할도 가능하면 축소되어야 한다. 반면에 조건이 강조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조건이나 지위에 처할 경우, 법적 제재나 공적 간섭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이때 비지배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이라는 조건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비지배 자유원칙은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관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10].

이는 집단이나 개인들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질적인 자유의 조건을 형성하고, 이러한 조건의 형성을 위해 국가행위의 한계와 정당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실질적인 힘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된, 특히 사회적 다수나 지배적 집단과의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비지배 자유의 조건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호혜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사회

6) 오랜 전통의 공화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한데, 이는 내부적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공화주의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지적 원천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연원하는 정치적 참여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키케로로부터 연원하는 정치적 참여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로부터 시민적 덕성과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 후자는 시민의 연대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과는 달리 개인의 자율성과 법의 지배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았던 로마공화국에서 그 기원을 찾는 ‘신로마 공화주의’로 분류된다. 이른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로 정의되는 고전적 자유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개인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화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방식을 취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오랜 논쟁, 즉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주의의 ‘적극적 자유’라는 도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가능성을 신로마 공화주의가 보여줌으로써 학문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스키너가 처음 제기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페릿이다. 이와 같은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 모두 ‘고전적’ 공화주의라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해석을 통해 시민적 공화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밝힌 포콕은 스스로가 발견한 바를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불렀으며, 신로마 공화주의자들도 로마 공화국에서 비롯된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로 고전적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광준혁,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2호, 2007, 132-211쪽.

적 약자들 역시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게 한다. 나아가 자의적 지배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정당화됨으로써 사회적 권리의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과 함께 개인이나 집단을 종속의 상태로 밀어 넣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비지배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간섭 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또한 오직 간섭만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사실 지배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간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배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그 능력자가 그 권력을 이행하지 않아도 성립된다. 지배받는 자는 권력자에 대해서 항상 의존적이고 그 삶이 오로지 '자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자와 지배받는 자는 심리적으로 동등한 상태에 있지 못하며, 그저 두려움과 공포가 일상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자유를 훼손하는 심리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가령 비정규직이라는 고용불안정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 스스로 '3포'<sup>7)</sup>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향해 그것이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규정한다면, 그들은 분명 자유롭게 3포를 선택했다. 비지속적인 '유연한' 노동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련 없이 포기하게 만들었으리라. 그러나 비지배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들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에게 온정과 자비를 베풀어 간섭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

다고 해서, 혹은 포기하라고 으박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용인들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의 간섭 역시 가능하다. 이는 간섭행위가 간섭 받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일 때 가능한 상황으로 이러한 간섭은 '비자의적 간섭'으로 명명된다. 이 같은 비자의적인 간섭은 비자유를 야기하지 않는다. 즉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3포의 노동자와 이를 억압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고용주로 돌아가 보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억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고용주의 자비심이나 호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방식을 통해서도 비간섭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고용주가 다행스레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인 덕분에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비간섭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조차도 노동자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용주에 의한 자의적 간섭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간섭은 없다. 그렇지만 고용주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즉 자의적 의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늘 예측할 수 없는 간섭의 해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 그는 결코 삶을 즐기거나 인생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억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즉 고용주에 의한 자의적 간섭을 금하는 제도나 법을 요청함으로써 노동자는 마음의 평정을 느끼며, 체계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영위

7)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 '3포세대(三抛世代)'라는 말이 유행했다. 고용불안정과 빈곤 등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입장을 빗대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하여 '5포세대', 여기에 덧붙여 '희망'과 '꿈'을 포기해서 '7포세대'가 등장하더니, 급기야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다포세대'마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끝자대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의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 즉 고용주의 비지배를 통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의 자유의 상태는 현재 타인이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지배 자유관은 법, 특히 비자의적 법은 자유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실현시키는 기제로써, ‘법의 지배’, 즉 ‘비자의적 간섭’을 통해 자의적 권력의 존재로부터 사적 지배를 차단하고 자유의 촉진적 기능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의 임무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행위자의 지위, 조건을 구현함으로써 개인들이 예속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며, 나아가 예속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구제하고 자유를 창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수행한다.<sup>8)</sup>

이처럼 지배의 부존재, 즉 비지배의 자유를 말하는 페릿에게 ‘지배’는 타인의 선택과 삶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능력과 권능을 말한다. 이러한 지배가 자유를 제약하는 주요인이라고 한다면, 자유는 타인의 변덕스럽고, 불분명하고, 알 수 없는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유는 타인의 변덕에 따라 내 선택과 삶이 좌지우지되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이

와 같이 자유와 부자유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이나 선택과 삶에 나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해서 간섭하는 경우와 타인이 지금 당장에는 나의 선택과 삶에 그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자의와 재량에 따라 간섭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간섭으로서의 자유 하에 있더라도 자유한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하에 있더라도 부자유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페릿에게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 바로 불간섭의 자유가 아닌 비지배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간섭의 부재로서 자유는 실제 세계(actual world)에서 간섭이 없는 것을 자유로 여긴다면 지배의 부재로서 자유는 지금 현재 간섭이 없다 하더라도 간섭이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세계(possible world)가 있음을 주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간섭을 받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의적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현실생활의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또한 강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요된 전략적 삶의 필요성이 최소화됨을 의미한다[8].<sup>9)</sup> 따라서 비지배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자의에 휘둘림

8) 페릿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간섭하지 않는 지배(domination without interference)’와 ‘지배하지 않는 간섭(interference without domination)’의 구분을 통해 간섭과 지배의 구별을 시도한다. 이때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통해 지배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지배란 주인이 노예의 선택에 자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인은 노예의 이익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 매우 친절하거나 특별히 어떤 노예를 좋아하는 경우 혹은 노예가 주인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경우 주인은 노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예는 간섭은 받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주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내가 주인의 마음을 잘못 읽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배자는 자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개입하여 언제든지 나를 간섭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섭은 없지만 지배하에 있다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페릿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행위에 간섭하는 경우, 비록 내가 타인으로부터 간섭은 받지만, 지배를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페릿은 덧붙인다. 그에 의하면 이 경우 간섭하는 타인은 주인이라기보다는 나의 대리인(agent)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법’ 혹은 ‘정부’가 바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에 해당한다.

9) 가령 지배하에 있는 나는 강자의 눈치를 항상 살피야 하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미리 걱정해서 그를 만족시켜야 하며, 그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는 등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을 페릿은 ‘전략적 복종(strategic deference)’라고 명명한다. 비지배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의적인 간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삶의 불확실성의 수준을 낮추어 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복종의 필요성도 없애준다고 말한다. 물론 비간섭의 자유 역시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복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간섭의 자유가 전략적 복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항상 강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나가으로써, 즉 우리 스스로의 타고나 기지(native wit)나 잔꾀(cunning)가 동원될 때 비간섭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전략적인 야心和 도피가 만연한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의 삶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강요된 전략적인 성향은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control)'할 수 있게 되는데, 행위자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지배 자유는 각 개인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감에 있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쟁과 축적의 미덕의 시대에 단지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과 방해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 관계에 현존하는 극심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개인적 삶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넘어서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마치면서: 생명의료윤리 담론에서의 비지배 자유의 가능성<sup>10)</sup>

비침과 첼드레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칸트와 밀로부터 이끌어낸다. 주지하다시피 칸트의 정언명법 마지막 정식은 “너의 의지가 그 자체로 동시에 너의 준칙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자율성의 원리다[11]. 즉 다른 어떤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도덕법칙을 만들어 내는 이성적인 인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간이기에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단지 수단적 존재가 아니며, 목적 그 자체로 취급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칸트의 자율성 개념은 선택이나 선호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자율성’

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의 원리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만이 바로 의지의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때 의지는 개인의 성향이나 이익, 열망과는 다른, 옳기 때문에 따르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면 스스로 도덕법칙의 입법가가 됨과 동시에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의 자율성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한편 밀에 의하면 누구나 각자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자유가 유보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그 개인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이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밀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개별성(individuality)’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개별성이 진정 발휘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만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자유의 기본원칙과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밀은 성숙한 인간을 전제한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해하는 성숙한 인간만이 자기결정을 통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밀의 입장에 따른다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릴 만한’ 행위 결정자의 자유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12].

이와 같은 칸트와 밀의 이해로부터 비침과 첼드레스는 자율성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한 “자율성의 세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그들에게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

10)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심사의견을 숙고한 결과 몇몇의 부분들은 수정했으며, 필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했음을 밝힌다. 무엇보다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여전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비지배 자유의 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 나아가 구체적인 생명의료윤리의 쟁점들에 있어 그러한 분석의 시사점 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반드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동”과 “충분한 정보를 근거한 선택”, 그리고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결정”에 다름 아니다. 우선 행위자의 결정은 자발적이며,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특정판단을 유도하는 요인들로부터의 독립된 상황을 전제한다. 즉 ‘지금’, ‘이곳’에서 행위자가 처한 상황적 특수성이나 그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맥락적 상황들은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질병에 의한 손상으로 주변 사람들, 특히 의사나 가족에게 의존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자에게는 비현실적이다. 물론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정보, 가령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선호나 감정의 당사자로서는 자율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질병 및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 제시되는 치료의 다양한 선택사항에 대한 부담감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주변 관계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될 때이다. 따라서 비침과 칠드레스의 자율성의 조건들은 환자의 현실적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율성 개념은 행위자의 충분한 이해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특히 밀의 자유 조건인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건 역시 환자에게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의 이해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통증, 고통,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낮은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한 자신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종종 정신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받음

으로써 상당히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상태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식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요컨대 그것은 현실에서 환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비침과 칠드레스가 분석한 조건들은 행위자에 의한 자율성의 발휘라기보다는 오히려 밀의 자유의 원칙에 더 가깝게 이해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행위 결정자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자율성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는가? 자유로운 선택이 자율성의 발휘인가? 자유로운 선택의 존중이 실제로 자율성의 존중이라 할 수 있는가?

자율성(autonomy)은 그 어원에서도 이미 내재되어 있듯, 외부부터 부과되지 않은 ‘스스로(autos)’ 세운 자신의 ‘법칙(nomos)’을 따르는 것으로, ‘자기규제’ 혹은 ‘자기규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타인의 권리나 이익에 그 어떤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정이었다더라도, 때때로 자신의 그러한 자유 행사가 합당한 지에 대해 스스로 따져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선호와 열망, 이익에 따른 선택이었음에도 자기규제나 규율에 의해 기꺼이 그 결정이 철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왜 추구하는 지, 그 타당성을 숙고할 수 있는 “도덕적 반성”의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율성 실현에는 자유 행사를 넘어서는 ‘도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13].<sup>11)</sup>

11) 생명의료윤리 담론의 자율성 논의에서 “도덕적 반성”을 포함시킨 분석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참조할 것.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4집 1호, 2011, 17-27. 필자는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공유되어 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밀의 전통을 따르는 자유의 존중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답변은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윤리와 무관한 행위의 선택이 아닌, 윤리적 가치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칼라한(D. Callaha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소위 사적 선택들이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의 부재”라는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생명의료윤리 담론에서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그 자체로 관계적 속성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 관계가 갖는 역압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약화되거나 강제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나 지위 확보를 강조한다. 또한 비지배 자유는 고립된 원자적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동료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발휘된다. 이는 개인이 결코 완전하게 독립적이지는 않은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 있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삶에 있어 자기주도(self-direction)를 가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의료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환자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 국가재정을 통한 공공병원의 확충이나 일정 수준의 치료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의사 결정자로서 환자는 자신의 상황과 수준에 걸맞은 의학지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학적 의사결정 프로그램 운영 등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성과 대칭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비지배 자유

는 대립하는 쌍방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쌍방 간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에서, 차별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절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힘의 불평등 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한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호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의적 지배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들의 자유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요컨대 비지배 자유는 개인 및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정책적 서비스 구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적절한 윤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비지배 자유는 생명의료윤리적 쟁점의 문제 상황에서 자율성을 단순히 자유로운 행위나 선택으로만은 이끌지 않는다. 오히려 행위자는 자신의 자유 행사에 합리적 이유를 찾으려는 도덕적 노력을 시도할 것이다. 비록 자신의 기호나 경향성 혹은 가치나 복지에 부합되더라도 때때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규제나 자기규율의 결과다. 비지배 자유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호혜적으로 발휘되는 비지배 자유는 결코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윤리와 무관한 행위의 선택일 수가 없다. 그것은 윤리적 가치에 대한 선택이다.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최선

도덕적 분석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학의 죽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엄격한 도덕적 반성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최경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경석은 도덕적 반성이 반영된 자율적 선택에 대한 브루스 밀러(B. Miller)의 분석을 통해 자율성이 어떻게 자유와 구별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에 이미 도덕적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필자의 과제는 이 개념으로부터 도덕적 함의를 얼마나 ‘잘’ 그리고 ‘세련되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 방법을 선택하는 권리와 자유의 추구를 넘어서 그러한 선택과 판단의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까지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타인에 대한,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책임 역시 요구됨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sup>12)</sup>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의 바탕으로 극단적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한 이 시대에는 사회는 없고, 오로지 경제력을 갖춘 개인만이 중요할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성이 없는 원자적 개인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개인이 축적한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사회전체의 작동체계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다. 즉 사유재산 역시 사회성의 산물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들의 협력을 통해 일궈낸 성과물인 것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시장숭배는 경제적 효율성을 경쟁의 최고기준으로 삼아 경제논리 이외의 가치들, 특히 민주주의, 규범과 도덕, 공익, 복지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침해하고 도외시함으로써 결국 민주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는 개인들의 인간다운 삶, 자유로운 삶에 대한 권리의 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때 비지배의 자유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에 처한 인간들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하나의 시대적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REFERENCES

- 1)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7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2) 유수정, 최경석.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생명윤리 2013 ; 14(1) : 49-63.
- 3)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서울 : 강, 2005 : 13-60.
- 4) 이영자.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개인주의: 개인주의의 후기 근대적 변종. 현상과 인식 2011 ; 35(3) : 103-127.
- 5) 에리히 프롬. 김병익 옮김. 건전한 사회. 서울 : 범우사, 1984 : 131-133.
- 6) Lemke T.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2001 ; 30(2) : 190-207.
- 7) 최병두, 김홍중, 박지웅 등.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쇠퇴기에 생각해보는 새로운 전망. 경산 : 열린길, 2010.
- 8) 필립 페딧. 곽준혁 옮김.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파주 : 나남, 2012.
- 9) 이샤야 벌린. 박동천 옮김. 자유론. 서울 : 아카넷, 2006.
- 10)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2004 ; 12(2) : 34-65.
- 11)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 Felix Meiner Verlag, 1994.
- 12)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 서울 : 책세상, 2010.
- 13)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 ; 14(1) : 13-27.

12) 생명의료윤리의 담론에서 왜 자율성이 자유와 구별되어야 하는지, 즉 도덕적 반성을 포함한 자율성의 개념이어야 하는지는 무엇보다 오늘날 제기되는 생명의료윤리적 쟁점들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현대 의생명과학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치관이나 관례, 또는 사회질서나 체계에 맞서는 차원의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때때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s)의 발전으로 인해 대리모를 이용하여 대리출산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나 산전진단(Prenatal Diagnosis)검사법들이 개발되면서 심장기형이나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등과 같은 선천적인 장애나 유전질환을 가진 태아의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기존의 사회 관념이나 관례와 충돌하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유전학적 강화(Genetic Enhancement) 기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그 연구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그 기술이 개인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력과 위험을 가져 올지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과학기술의 위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생명의료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도덕적 반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 'Neo-liberal Individualism'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KIM Moon-Jeong\*

### Abstract

While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widely regard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 it is not completely clear how that principle should be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a reasonable concept of autonomy with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neo-liberalist individualism. Neo-liberalism developed out of the liberal tradition that emphasizes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However, the concept of autonomy at the root of this rights-based view has been transformed throug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and qualitative changes to, individualism. In this article I discuss and reconsider the meaning of autonomy in terms of "an individual" as reflected in the spirit of neo-liberal individualism. I argue that while competition and accumulation are thought to be virtues of contemporary life, liberty should be understood, not in terms of liberty from interference, but rather in terms of liberty from the severe inequalities caused by the dominant social relations. This notion of liberty as non-domination is central to a more robust and meaningful principle of autonomy.

### Keywords

neo-liberalism, liberalism, individualism, principle of autonomy, liberty as non-domination

---

\*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Biomedical Ethics, College of Humanities, Dong-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